

특허청 고시 제2018-32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소관 : 국제출원과]

개정 2008년01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7-16호	개정 2013년02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13-5호
개정 2008년05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6호	개정 2013년04월12일	특허청 고시 제2013-10호
개정 2008년07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14호	개정 2013년07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13-17호
개정 2008년09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08-18호	개정 2013년08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3-18호
개정 2009년01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23호	개정 2013년12월04일	특허청 고시 제2013-37호
개정 2009년02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09-1호	개정 2014년02월10일	특허청 고시 제2014-4호
개정 2009년04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9-3호	개정 2014년03월24일	특허청 고시 제2014-9호
개정 2009년07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09-13호	개정 2014년06월30일	특허청 고시 제2014-19호
개정 2009년08월24일	특허청 고시 제2009-20호	개정 2014년11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14-30호
정정 2009년10월20일	특허청 고시 제2009-28호	개정 2015년03월12일	특허청 고시 제2015-3호
개정 2009년11월02일	특허청 고시 제2009-37호	개정 2015년06월23일	특허청 고시 제2015-9호
개정 2009년12월04일	특허청 고시 제2009-40호	개정 2015년11월18일	특허청 고시 제2015-32호
개정 2010년01월26일	특허청 고시 제2010-2호	개정 2015년12월14일	특허청 고시 제2015-37호
개정 2010년02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0-3호	개정 2016년05월11일	특허청 고시 제2016-10호
개정 2010년04월05일	특허청 고시 제2010-7호	개정 2016년09월02일	특허청 고시 제2016-22호
개정 2010년06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0호	개정 2016년11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6-26호
개정 2010년07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10-12호	개정 2017년02월28일	특허청 고시 제2017-6호
개정 2010년07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10-13호	개정 2017년09월22일	특허청 고시 제2017-21호
개정 2010년09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6호	개정 2017년11월22일	특허청 고시 제2017-25호
개정 2010년11월2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7호	개정 2017년12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7-28호
개정 2011년03월31일	특허청 고시 제2011-5호	개정 2018년02월12일	특허청 고시 제2018-1호
개정 2011년07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11-14호	개정 2018년05월23일	특허청 고시 제2018-8호
개정 2011년10월06일	특허청 고시 제2011-20호	개정 2018년09월03일	특허청 고시 제2018-21호
개정 2011년12월06일	특허청 고시 제2011-25호	개정 2018년11월14일	특허청 고시 제2018-25호
개정 2012년03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2-2호	개정 2018년12월21일	특허청 고시 제2018-32호
개정 2012년04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2-4호		
개정 2012년05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12-5호		
개정 2012년06월18일	특허청 고시 제2012-7호		
개정 2012년08월22일	특허청 고시 제2012-31호		
개정 2012년09월17일	특허청 고시 제2012-32호		
개정 2012년10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12-33호		
개정 2012년12월13일	특허청 고시 제2012-38호		

1.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279,000원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768,000원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683,000원

3. 취급료 226,000원

4. 감면료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c)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고고시된 매매
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6. 삭제

7. 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